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덕흠 의원)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 경쟁을 확대할 것이고, 그 방안으로 기존 법인의 지정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을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지정제 도입을 통한 도매시장 내 경쟁 확대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르면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은 안 제23조제7항을 통하여 법률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공모방식의 지정은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됨.

다만, 개정안을 통하여 공모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 재지정제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내 경쟁 확대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보다 공모지정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나.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

농산물 등의 도매가격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 등을 중도매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경매·입찰 방법이 매매방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가격경쟁을 통하여 도매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 문제가 나타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그 방안 중 하나로서 경매·입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공급 균형에 따른 경쟁시장 가격결정 원리에 적은 영향을 받는 정가·수의매매가 도매시장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경매사가 수행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력 기반 마련을 통하여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율 조정

현행법 제42조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해당 업무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국 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물량 중 34.8%, 거래금액 중 35.5%의 비중(202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가락시장에 한하여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7%에서 4%로 조정하려는 것임.

그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이 지나친 위탁수수료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위탁수수료율 조정 대상을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

시장법인'으로 한정하는 것과 관련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 2개소 중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시장은 가락시장 1개소 뿐이므로,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가락시장 내 5개 법인(1개 공판장) 뿐임.

셋째, 개정안의 위탁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하여, 최고한도를 4%로 규정하여 인하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 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물량의 34.8%가 거래되는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는 단순히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영업이익률 감소 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내 출하자나 타 유통종사자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

따라서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의 하향조정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매시장 내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필수적 지정 취소

현행 법령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두 가지 지정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평가를 통한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거나, ② 지정조건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러한 평가제도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도매시장에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장기간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임미애의원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기준을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하위 30%로 부진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진 도매시장법인의 판단기준을 임미애의원안과 같이 하는 경우 신규 법인의 진출입 활성화를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인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주기 때문에 '지정 기간 내'에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현행법령상 기준의 단점인 '지정 기간 도과 시 그간 받은 부진평가 이력 삭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부진 평가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이익 추구 행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매년 30%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지정하게 되어 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 구성에 빈번한 변화가 발생함.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수도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